

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립

- I.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
기본원칙
- II.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
- III. 행정사항
- IV.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

I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

□ 기금수입

-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를 단순화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강화
- 선 수입 추계 후 지출사업 편성 의무화
 - 사업 지출액에 맞춘 수입편성은 무리한 지출사업 확대편성의 원인이 되므로, 반드시 선 수입 추계 후 이에 따른 지출편성을 의무화

□ 기금지출

-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합리한 지출요인을 사전에 제거
 - 모든 기금사업을 zero-base에서 검토한 후 편성
 - 설치 조례에 맞지 않는 기금사업 편성은 원천 배제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
- 집행률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
 -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 규모를 반영하여 편성규모를 감축하는 한편, 사전에 파악한 사업수요를 당초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

II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

1 수입 계획

- ▶ 품목별 예산 수입체계와 동일하게 작성
- ▶ 예산과목은 『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』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

작성원칙

-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하되, 내부거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통해 계상금액을 일치
 -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 처리한 후 순수입만을 계상하는 것은 금지
 - 재정투융자기금과의 거래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치시켜 계상
- 기금별 수입 특성을 감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
 - 최근 수년간 수입실적 및 향후전망, 제도변경 요인 등 특이요인을 분석 검토 후 추계하고 수입 항목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
- 수입 비중이 높은 예치금회수(전년도 이월금) 과목의 정확한 추계
 - '18년도 결산잔액에서 '19년도 수입·지출 결산 전망액 가감을 통한 예치금 예상금액에 연동하여 동일금액을 예치금 회수 수입금액으로 반영
 - 이를 위해 '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여 '18년 계획변경 예치금과 '20년도 예치금회수를 일치

□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

주요항목			과	목			
수	전	입	금	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(721-01), 공사·공단전입금(721-02), 기타회계전입금(721-03), 기금전입금(721-04),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(721-05), 자치단체간 부담금(222-01)			
	보	조	금	국고보조금(511-01)			
	차	입	금	국내차입금(610), 국외차입금(620)			
	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			민간용자금회수수입(713-01), 민간용자금회수이자수입(216-02), 공사·공단 등 용자금 회수수입(713-03), 공사·공단 등 용자금회수 이자수입(216-04), 시군구 용자금회수 수입(713-04), 시군구 용자금회수 이자수입(216-05), 통화금융기관 용자금회수수입(713-02), 통화금융기관 용자금회수 이자수입(216-03)		
	예	탁	금	원	금	회	수
입	예	치	금	회	수	예치금회수(714-01)	
	예	수	금	예수금수입(722-01)			
	이	자	수	입	공공예금이자수입(216-01), 기타이자수입(216-06), 예탁금이자수입(722-04)		
	기	타	수	입	그 외 세입과목		

① 전 입 금

- 계상과목 : 기타회계전입금(721-03)

- ▶ 일반/특별회계로부터 기금에 향후 회수조건 없이 전입되는 수입
- ▶ 우선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으로 세출요구분 반영(추후, 조정금액 반영)

② 보 조 금

- 계상과목 : 국고보조금등(511)

- ▶ 중앙부처에서 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해 계상
- ※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 수입으로 반영

③ 용자금 회수

- 계상과목 : 민간용자금회수수입(713-01)

- ▶ 취급은행 등과 협조하여 회수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(만기 회수금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)

- ▶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(조기회수/전년도 용자잔액)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기회수금 반영
- 계상과목 : 민간용자금회수이자수입(216-02)
 - ▶ '20년도 중 용자건별 잔액 × 예치기간/365일 × 이율로 계상
 - ※ '민간용자금 이자수입'은 '이자수입'이 아닌 '용자금 회수'에 포함
- 민간용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

◦ '20년 중 각 용자자금별 잔액 × 기간 ×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
 ※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= 대출이자율 - 용자취급기관 수수료율

④ 예치금 회수(714-01)

- ▶ '19년도 지출 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말 예치금(수입-지출의 잔액)을 재산정 후 '20년도 예치금 회수로 계상('19년도 예치금은 '20년도 예치금회수금 수입으로 연도 이월됨)
- ▶ 이 경우 '19년도 수입 지출금액의 정확한 결산 전망치를 반영한 '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병행

⑤ 예탁금원금 회수수입(722-03)

- ▶ '19년도말 추정 예탁잔액 중 '20년도에 정기(만기)회수금액
- ▶ 만기 도래전 조기상환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시 가능
- ▶ 예탁금 상환금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맞춰 계상

⑥ 예수금 수입(722-01)

- ▶ 타회계 및 기금(재정투융자기금)으로부터 가져온 내부 차입금
- ▶ 기금 자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 지양하고, 빌려오는 회계(재투기금) 사전협의 완료 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맞춰 계상

⑦ 이자수입

- 계상과목 : 공공예금 이자수입(216-01)

- ▶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에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입만을 대상으로 계상하고, '20년도 중 자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추계
- ▶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

• '20년 중 평균잔액 × **평균이율**

※ **평균이율은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(만기)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 후 산출**

- 계상과목 : 예탁금 이자수입(722-04)

- ▶ 타회계 및 기금에 예탁한 자기에 대한 이자수입
 - ※ 예) 재정투융자기금에 여유자금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
- ▶ 예탁금 이자수입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이자 상환금에 일치시켜 계상
 - ※ 이자수입은 '여유자금(예치금 등) 운용 이자수입'만 계상
 - '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'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

⑧ 기타 수입

- 부담금수입, 과태료수입, 그외수입 등 기금별로 관계 법규 등에 따라 특이요인을 감안하여 수입에 반영
 - ▶ 최근 수년 간 수입실적 및 향후 전망을 반영하여 추계
-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 『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
-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
-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(214-07)도 기타수입에 편성

2 지출 계획

- ▶ 사업예산 운영기준에 의해 사업구조화 철저
- ▶ 예산과목은 『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』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

□ 작성원칙

-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 타당성 철저히 검토
 - 특히, 신규 사업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 부합정도,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
- 타 회계·타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
- 기금관련 시의회 또는 외부감사에서의 지적 사항 적극 개선 반영
 - '18년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을 고려하여 편성
 - 순자산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 용자금을 제외한 비용자성사업비를 최근 집행률 범위내로 축소
- 대규모 투자 및 행사성 사업은 사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전절차 이행 후 요구
 - 세부사업단위별로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,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재정투융자심사 사전 이행
- 사업예산 체계에 맞춰 사업 구조화 철저
 - 분야, 부문, 정책사업은 실·본부·국별/과별 사업구조에 일치
-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
 -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가입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

□ 주요 지출항목별 작성기준

주요항목	과목	
비용자성사업비	장학금, 구호금, 보조금,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(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자산취득비 등 포함)	
용자성사업비	정책사업의 용자금(501),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용자금(501-04), 공사공단 등 용자금(501-03)	
지	인력운영비 (구 인건비)	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(101), 직급보조비(204-02), 성과상여금(303-02), 연금부담금(304-01), 국민건강보험금(304-02)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
	기본경비 (구 물건비)	행정운영경비(정책사업비 제외)의 일반운영비(201), 여비(202), 시책추진업무추진비(203-03), 자산취득비(405),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
	예탁금	재무활동의 예탁금(704)
출	예치금	재무활동의 예치금(602)
	차입금원리금상환	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(311), 차입금원금상환(601)
	예수금원리금상환	재무활동의 예수금원금상환(705-01), 예수금이자상환(705-02)
	기타지출	과징금 등 수입의 자치단체 징수교부금(308-02, 식품진흥기금), 국고보조금 반환금(802-01), 과오납금 등(802-03)

① 비용자성사업비

- 기금의 설치조례에 근거한 목적사업(용자금, 재무활동비, 행정운영경비를 제외)
- 계상과목: 전과목 가능(여비, 업무추진비 원칙적 제외)
 - ▶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장학금, 구호금 보상금 등이 해당
 - ▶ 목적사업 중 용자금과 재무활동,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별도 계상
 - ▶ 모든 사업(세부사업 단위)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
 - ▶ 기금 설치조례상 목적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편성 금지

목적 사업편성 시 유의사항

1.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과 일치하는가?
2. 시 기금재원을 투입해야 하는가?
 - 자치구 사무인가 여부, 사업의 공공성 여부 판단
3. 일반/특별회계, 타기금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?
 - 사업목적, 수혜대상 등이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
4. 대규모 투자사업 및 행사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?
 - 투자사업 40억원 이상, 행사사업 3억원 이상은 투자심사 사전이행
5.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?
 - 지원방법 변경검토(예 : 보조사업 → 용자사업)
 - 지원조건 변경검토(예 : 전액지원 → 일부지원)

② 용자성사업비

- 계상과목: 민간용자금(501-01),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용자금(501-04)
 - ▶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향후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용자하는 자금
 - 예) 중소기업육성기금·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용자하는 금액
 - ※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용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
 - ▶ 최근 수년간 집행실적, 향후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영
 - ▶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(예수)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용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지양
 - ▶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,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용자이율 조정

③ 인력운영비

- 계상과목: 인건비(101), 직급보조비(204-02) 등
 - ▶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불가,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지역 인부임 등 계상 가능

④ 기본경비

- 계상과목: 일반운영비(201-01,02,03)
 - ▶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(정책사업비는 제외) 범주에 속하며 기금운영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
 - ※ 위원회 심의수당 등 최소필요경비만 계상
 - ▶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,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·집행

⑤ 예탁금

- 계상과목: 재무활동의 예탁금(704)
 - ▶ 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회계 및 기금에 회수를 전제로 예탁하는 이동자금으로 일반적으로 타 기금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맡겨놓은 자금
 - ▶ 장기(1년 만기)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예치 대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함

⑥ 예치금

- 계상과목 :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(602)
 - ▶ 연중 총수입 -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'19년도말 기금 잔고(시금고 잔액) 예상액

3 기금운용계획서 구조

기금운용계획서		시스템	수작업	비고	
총괄기금운용계획	1. 기금개요(가. 운용방침)	○			
	(나. 기금현황)	○			
	2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	○			
	3. 기금조성규모	○			
기금별 기금운용계획	4. 기금 총 조성규모	○			
	1. 운용총칙	○			
	2. 자금운용계획	가. 자금수지총괄	○		
		나. 수입계획	○		
		다. 지출계획	○		
	3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	○			
	4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	○			

4 작성 시 유의사항

① 내부거래 편성 관련 유의사항

- 내부거래 과목은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 일치

주는 과목	받는 과목	확인원칙
기금전출금	기타회계전입금	일반/특별회계 세출요구에 일치
예탁금	예수금	주는 회계 쪽에 일치
예수금원금상환 (예수금이자상환)	예탁금원금회수 (예탁금이자수입)	재투기금 기준으로 일치

- ※ 재정투융자기금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치 (기금특별회계 거래원금 조정 후 예산담당관에서 회계별 원리금 일괄 통보 및 수정 예정)
- ※ 기금에서 일반, 특별회계,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·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

② 위원회 참석수당

- 법령·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
- 기준액

구분	단위	단가	비고
위원회참석비	일당	◦ 기본료 : 100,000원 ◦ 초과 : 50,000원	◦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◦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
사이버위원회 참석비	일당	◦ 기본료 : 50,000원 ◦ 초과 : 20,000원	◦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◦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

③ 민간이전 경비 편성 관련 유의사항

- 계상과목 : 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, 민간행사사업보조(307-04),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
- 동일사업 3년 경과 시 일몰제 적용 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
 - ▶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
 - ▶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
 - ▶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
 - ▶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반영

Ⅲ 행정사항

1 2020년 기금운용계획(안) 수립일정

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기준(안) 시달 : 7월중

※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시달 후 변경내용 등 추가 통보

② 기금운용계획(안) 시스템 입력 및 사업설명서 제출 : 8. 4.(금)

- 각 기금운용관 → 총괄기금관리관(기획조정실장)
- 제출 : 수입(목별요구서 및 설명서), 지출(세부사업 설명서, 세부사업 집행전망 등)

③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·조정 : 8월초 ~ 10월초

-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제출한 운용계획안 검토 및 협의(총괄기금관리관)
-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·검토사항 통보(총괄기금관리관→ 각 기금운용관)

④ 기금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: 10. 20.(금)까지

- 기금별 각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추진
-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: 각 기금운용관→총괄기금관리관

⑤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 : 10월말

⑥ 시의회 제출 : 11월초

2 기 타 사 항

-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작성은 본 지침을 따르되, 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거나 수정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『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』에 따라 작성
-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계획서에 선 반영하되 추후 확정금액 조정반영

IV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

< 양식 제1호 서식 > - 기금운용계획서 총괄부분

기금운용계획서

2020. .

기금명(부서)

가.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

기금운용계획서		비 고	
총괄 기금운용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금개요(① 운용방침)		
	(② 기금현황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금운용계획 총괄표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금조성규모		
기금별 기금운용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운용총칙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자금 운용계획	① 자금수지총괄	
		② 수입계획	
		③ 지출계획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		

나.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

기금개요

① 운용방침

○

② 기금현황

기금명	설치년도	설치목적	설치근거	소관부서	비고

기금운용계획 총괄표

(단위:천원)

기금명	수입계획								지출계획												
	계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융자금회수	예탁금원금회수	예치금회수	예수금	이자수입	기타수입	계	비용자성사업비	융자성사업비	이전연회비	기보연비	예탁금	예치금	차입원금금상환	예수원금금상환	기타지출	
합계																					

※ 융자금회수 :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/ 이자수입 :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

기금조성 현황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:천원)

기금명	'19년도말 조성액 ㉑	'20년도 기금운용계획		'20년도말 조성액 ㉓ = ㉑ + ㉒ - ㉔	증감 ㉕ = ㉓ - ㉑
		수입 ㉒	지출 ㉔		
합계					

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
※ 융자금은 지출 ㉔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:천원)

기금명	'20년도말 조성액(a)	용자금 미회수채권(b)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(c)	총 조성규모 (d)=(a)+(b)-(c)
합계				

※ 용자금 미회수채권(b) : '20년도말 시점,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
 ※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(c) : 지역개발기금만 해당

다. 기금별 기금운용계획

□ 운용총칙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○○법 제○○조 및 ○○시·도○○조례
- (2) 설치목적 :
- (3) 설치년도 :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(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)
- (2)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
 - ※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, 중점추진과제,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○ 연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:천원)

'19년도말 조성액 (a)	'20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0년도말 조성액 (e)=(d)+(a)	비고
	수입(b)	지출(c)	증감 (d)=(b)-(c)		

※ 수입 : 전입금,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)
 ※ 지출 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:천원)

'20년도말 조성액(a)	융자금 미회수채권(b)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(c)	총 조성규모 d=(a)+(b)-(c)

※ 융자금 미회수채권(b) : '20년도말 시점,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
 ※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(c) : '20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(이자 제외)

- (2) 재원조성 :
- (3) 지원기준 :
- (4) 지원대상 :

□ 자금운용계획

① 자금수지총괄

(단위: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 목	'20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항 목	'20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합 계				합 계			
전입금				비용자성사업비			
보조금				융자성사업비			
차입금				인력운영비 (구 인건비)			
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				기본경비 (구 물건비)			
예탁금원금회수				예탁금			
예치금회수				예치금			
예수금				차입금원리금 상환			
이자수입				예수금원리금 상환			
기타수입				기타지출			

②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장	관	항	목	'20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	산출내역
200 세외수입							
	210 경상적세외수입						
		211 재산임대수입					
			}				
수 입 합 계							

③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조직	부문	정책	단위	세부	편 성 목	'20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					산출기초 표기			
지 출 합 계								

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조성액							집행액							잔액 ①-②	
	계 ①	전기예금	보조금	차입금	융자 금회수 (이자 포함)	예수 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 ②	비 자 성 업 비	융 자 성 업 비	인 력 영 용 비 및 기 본 경 비	차 입 금 리 상 환	예 금 리 상 환		수 원 금 상 환
Y-6년 까지																
Y-5																
Y-4																
Y-3																
Y-2																
Y-1																
2020 년도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

- ※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(회수) 및 예탁금(상환)은 제외됨
- ※ 잔액 계는 나.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□ 기금조성현황의 해당기금 '19년
도말 조성액①와 동일(2020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
②와 동일)

□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치(탁)처	예치금 및 예탁금				비 고
		'18년도말 현재액	'19년도말 현재액 ^①	'20년도말 현재액 ^②	증 감 (^② - ^①)	
합계						
예치금	소 계					
	○○은행					
	○○은행					
예탁금	소 계					
	○○회계					
	○○회계					
	○○기금					
	○○기금					

※ 2018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, 2019·2020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

참고

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

※ 작성 서식 및 체계만 참고(내용, 수치는 가상의 예시임)

I

성평등 목표

- 00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
 -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
 -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
 -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
-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·경제적 역량 강화
 -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
 -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
 -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

II

성인지예산 편성방향

- 00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의 728,358백만원임
-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다문화 이해와 여성복지 도모가 가능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
 -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개(513,737백만원),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개(115,019백만원)이며,
 -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0개(603,905백만원), 일반공공분야 사업 9개(4,589백만원), 교육분야 사업 3개(2,339백만원), …… 과학기술분야 사업 2개(72백만원)임

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

□ 총괄표

(단위 : 개, 백만원, %)

회계별	사업 수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 예산액	증 감	증감률
총계	92	728,357	569,176	159,181	27.97%
일반회계	84	662,823	505,917	156,906	31.01%
기타특별회계	6	65,021	62,733	2,288	3.65%
기금	2	513	527	△14	△2.66%

□ 사업별 총괄표

(단위 : 개, 백만원, %)

기금별	사업 수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 예산액	증 감	증감률	
총 계	92	728,357	569,176	159,181	27.97%	
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	소계	13	513,717	375,468	138,249	36.82%
	일반회계	12	513,627	375,378	138,249	36.82%
	기타특별회계	0	0	0	0	0%
	기금	1	90	90	0	0%
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	소계	41	115,019	93,476	21,542	23.05%
	일반회계	37	108,239	89,371	18,867	21.11%
	기타특별회계	3	6,357	3,668	2,689	73.31%
	기금	1	423	437	△14	△3.20%
자치단체 특화사업	소계	38	99,621	100,232	△611	△0.61%
	일반회계	35	40,938	41,167	△229	△0.54%
	기타특별회계	3	58,683	59,065	△382	△0.65%
	기금	0	0	0	0	0%

□ 조직별 총괄표

(단위 : 개, 백만원, %)

구 분	개수	'20년 예산액		전년도 당초 예산액		증 감	
	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총 계	92	729,359	100%	569,176	100%	159,180	27.97%
본 청	80	722,819	99.10%	563,833	99.06%	158,986	28.20%
대 변 인	1	61	0.01%	35	0.01%	27	76.15%
대 변 인	1	61	0.01%	35	0.01%	27	76.15%
· · ·							
기 획 조 정 실	1	3,084	0.42%	2,677	0.47%	407	15.20%
정 책 기 획 관	1	282	0.04%	232	0.04%	50	21.52%
교육협력담당관	3	2,339	0.32%	1,979	0.35%	374	18.19%
정보통신담당관	1	463	0.06%	466	0.08%	△3	△0.63%
· · · · · ·							

IV 실 · 국별 성인지예산서

기획조정실

□ 성인지예산 편성방향

- 기획조정실의 2020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
-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
 -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(423백만원)이며,
 -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(423백만원)임

□ 총괄표

(단위 : 개, 백만원, %)

회계별	사업 수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 예산액	증 감	증감률
총계					
일반회계					
기타특별회계					
기금	1	423	437	△14	△3.3%

□ 사업별 총괄표

(단위 : 개, 백만원, %)

기금별	사업 수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 예산액	증 감	증감률
총 계					
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	소계				
	일반회계				
	기타특별회계				
	기금				
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	소계				
	일반회계				
	기타특별회계				
	기금	1	423	437	△14
자치단체 특화사업	소계				
	일반회계				
	기타특별회계				
	기금				

교육협력담당관

□ 성인지예산 편성방향

-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20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
-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사업을 편성하였음
 -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(423백만원)이며,
 -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(423백만원)임

□ 총괄표

(단위 : 개, 백만원, %)

회계별	사업 수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 예산액	증 감	증감률
총계					
일반회계					
기타특별회계					
기금	1	423	437	△14	△3.3%

□ 사업별 총괄표

(단위 : 개, 백만원, %)

기금별	사업 수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 예산액	증 감	증감률
총 계					
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	소계				
	일반회계				
	기타특별회계				
	기금				
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	소계				
	일반회계				
	기타특별회계				
	기금	1	423	437	△14
자치단체 특화사업	소계				
	일반회계				
	기타특별회계				
	기금				

<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①>

인재육성장학금 지급(인재육성장학기금)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래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
-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12월
- 추진근거 : ○○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(0000.0.0 시행)
- 총사업비 : 423백만원
- 사업내용 : 저소득주민 자녀,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, 환경미화원 자녀 중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

□ 성인지예산 대상사업

- 대상사업 유형

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	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	자치단체 특화사업
	○	

□ 소요재원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증감	증감률
계	423	437	△14	△3.3%
예산총계	423	437	△14	△3.3%
시비	423	437	△14	△3.3%

□ 성별 수혜분석

- 사업대상자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
계	106,189명	105,968명	103,666명
여성(비율)	48,990명(46.1%)	48,880명(46.1%)	48,415명(46.7%)
남성(비율)	57,199명(53.9%)	57,088명(53.9%)	55,251명(53.3%)

※ 통계청 00지역 고등학생 수

○ 사업수혜자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
계	321명	318명	222명
여성(비율)	178명(55.5%)	177명(55.7%)	114명(51.4%)
남성(비율)	143명(44.5%)	141명(44.3%)	108명(48.6%)

※ 장학금수혜자

○ 예산구분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
계	439.3백만원	438백만원	437백만원
여성(비율)	244.1백만원(55.6%)	243.9백만원(55.7%)	224.6백만원(51.4%)
남성(비율)	195.2백만원(44.4%)	194.1백만원(44.3%)	212.4백만원(48.6%)

※ 2017~2018년은 결산 금액이며, 2019년은 당초예산(계획)임

□ 성별격차 원인분석

- 저소득주민 자녀, 환경미화원 자녀,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생계가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기준은 없음
- 통계청(국가통계포털)에 의하면 10대의 학습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며, 위 표에서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도 그 결과를 반영,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

□ 성과목표

성과목표	2018년 실적	2019년 추정치	2020년 목표치
여학생 장학금 수혜자 비율	55.7%	51.4%	50.0%

※ 산출근거 : 장학금수혜자

□ 성평등 기대효과

-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

<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②>

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(농어촌진흥기금)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FTA 등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
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 상생협력 기회마련
- 사업기간 : 2005년 ~ 계속
- 추진근거 : 00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총사업비 : 45백만원
- 사업내용 :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여

□ 성인지예산 대상사업

- 대상사업 유형

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	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자치단체 특화사업
	○	

□ 소요재원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'20년 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증감	증감률
계	45	45	0	0.00%
농어촌진흥기금	45	45	0	0.00%

□ 성별 수혜분석

- 사업대상자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
계	36,196명	34,760명	32,368명
여성(비율)	18,388명(51%)	17,811명(51%)	16,409명(51%)
남성(비율)	17,808명(49%)	16,949명(49%)	15,959명(49%)

* 00시 농가 인구수

○ 사업수혜자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
계	330명	330명	330명
여성(비율)	170명(51.5%)	158명(47.9%)	162명(49%)
남성(비율)	160명(48.5%)	172명(52.1%)	168명(51%)

*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인 가족

○ 예산구분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
계	45백만원	45백만원	45백만원
여성(비율)	23백만원(51.5%)	22백만원(%)	22백만원(%)
남성(비율)	22백만원(48.5%)	23백만원(%)	23백만원(%)

※ 2017~2018년은 결산 금액이며, 2019년은 당초예산(계획)임

□ 성별격차 원인분석

○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

□ 성과목표

성과목표	2018년 실적	2019년 추정치	2020년 목표치
대회 참여자 여성비율(%)	47.9	49.0	50.0

* 산출근거 : 그간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설정

□ 성평등 기대효과

○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